

# 일 자리 안정자금



# ‘18.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!

## 일자리안정자금이란?

30인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,780억 원을 지원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## 문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
- 고용센터 콜센터 1350

# 사업 소개



## ▶ 일자리 안정자금이란?

- '18년 최저임금 인상(시급 7,530원)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,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### ▶ 소상공인 · 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

- '17년 최저임금(6,470원)에 비해 16.4%(1,060원) 인상

\*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: 7.4%



# 사업 소개



## ▶ 사업 프로세스



# 지원 요건



## ▶ 지원대상 사업주(사업주 요건)

### 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

- 다만,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,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

공동주택(아파트) 경비, 청소원 (30인 요건 미 적용,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)

### ✔ 지원 제외 사업주

- 고소득 사업주(과세 소득 5억 초과)
-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국가 또는 공공기관, 최저임금 미 준수 사업주
-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(어린이집 등)
-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



# 지원 요건



## ▶ 지원대상 근로자(근로자 요건)

### ✔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

- (상용근로자)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,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,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,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- (일용근로자)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서,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, 일당 87,000원 미만이며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
### ✔ 지원 제외 근로자

- 사업주의 배우자
- 사업주의 직계 존·비속
-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

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도 지원

예) 합법 외국인 근로자, 개인 운영 5인 미만 농·림·어업 근로자 등



# 지원 요건



## ✔ 30명 미만

- 지원희망월 이전 3개월간의 매월말일 근로자수 평균(3개월 미만이면 해당 개월수)

## ✔ 공동주택범위

-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“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”

## ✔ 고소득 범위

-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 단위(사업소득)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(당기순이익)

## ✔ 인건비 재정지원

- 운영예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(어린이집, 유치원, 사회복지시설 등)
-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해당 근로자만 지원 배제

## ✔ 고용조정 기업

-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, 권고사직, 명예퇴직 등)처리

## ✔ 최저임금 위반

- 정액급여(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)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'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,530원에 미달

# 지원 요건



## ✔ 임금체불 공개
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## ✔ 고용보험 적용(적용제외 근로자)

- 근로자 1인 이상 사용 사업주는 고용보험 당연적용(단, 4명 이하 개인 농업/임업/어업, 가구내 고용활동 제외)
-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(1주 15시간 미만 포함) 단시간근로자, 외국인근로자, 별정우체국직원

## ✔ 월평균 보수

- '18년도에 지급 예상되는 보수총액[근로소득(기본급+연장수당+상여금+성과급 등)-비과세소득]을 해당 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




## ✔ 임금수준 저하

- '17년도 월평균 보수액에 비해 '18년도 월평균 보수액이 저하된 경우

# 지급금액 및 절차



## ▶ 지원금액 산정

<p>주 40시간 이상,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정액 지급</li> <li>※ 최저임금 인상분 12만 원 + 노무비용 지원 등 1만 원</li> </ul>	
<p>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30 ~ 40시간 : 12만 원</li> <li>• 20 ~ 29시간 : 9만 원</li> <li>• 10 ~ 19시간 : 6만 원</li> <li>• 10시간 미만 : 3만 원</li> </ul>	
<p>일용근로자 - 월 근로일수 기준 (8시간 기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2일 이상 : 13만 원</li> <li>• 19 ~ 21일 : 12만 원</li> <li>• 15 ~ 18일 : 10만 원</li> <li>※ 일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</li> </ul>	

# 지급금액 및 절차



## ▶ 지급결정 및 지원금 지급

### ✔ 직접 '현금 지급' 또는 '사회보험료 대납'

- (현금 지급)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※ 매월 10일, 20일, 30일 등 입금일자 선택 가능
- (대납) 지원금 산정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고지금액에 따라 안분

### ✔ 공동주택 경비원, 미화원 등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로 지원금 지급

신청은 용역업체! 지원금은 입주자 대표회의!



### 계속지급


- 사업장 계속 가동, 계속 근무, 고용유지 노력 등 심사
-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(외국인, 초단시간, 일용근로자 등)
  - 매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

※ 최초 지원금 지급 후에는 지급방식 변경은 불가하며, 소급 신청(신청월 전전월 이전 지원금 신청) 사업주,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주, 공동주택, 자진신고 사업장(건설업, 별목업)은 직접 지급방식만 선택 가능

# 신청절차



## ▶ 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

- 신청자 :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
  - 사무대행 인정  기존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
- 신청 시기 : 연1회(소급신청 가능)
- 신청 내용 : 신청서, 구비서류 등
- 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원칙(5인 미만 사업장만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)
- 신청 접수 기관 : 사회보험 3공단, 고용센터, 주민센터(총 3,940개소)

- ▶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,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허용
  -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(근로복지공단, 국민연금공단, 건강보험공단), 고용센터, 주민센터로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신청

# 신청절차



## ▶ 온라인 신청

-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전용 웹사이트

## | 온라인 신청사이트

명칭	사이트 주소	운영기관	홈페이지 문의
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	<a href="http://www.jobfunds.or.kr">http://www.jobfunds.or.kr</a>	고용노동부	02-2004-7349
근로복지공단EDI (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)	<a href="http://total.kcomwel.or.kr">http://total.kcomwel.or.kr</a>	근로복지공단	1833-6000
국민건강보험EDI	<a href="http://edi.nhis.or.kr">http://edi.nhis.or.kr</a>	국민건강보험공단	1577-1000
국민연금EDI	<a href="http://edi.nps.or.kr">http://edi.nps.or.kr</a>	국민연금공단	063-713-6565
고용보험EDI	<a href="https://www.ei.go.kr">https://www.ei.go.kr</a>	한국고용정보원	1577-7114
4대보험정보연계센터	<a href="http://www.4insure.or.kr">http://www.4insure.or.kr</a>	국민연금공단	063-711-7800

# 신청절차



## ☑ 신청서식 및 유의사항

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, 기존 고용보험 신청서식을 활용하여 신청함에 유의

	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	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
신청서식	<p><b>기존 고용보험 신고서 활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고용보험 성립신고서,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</li> </ul> </li> <li>• 기 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원대상 근로자 월 평균보수변경신고서</li> </ul> </li> <li>• 일용근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(별도서식)</b></p>
첨부서류	<p><b>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임금대장, 무통장입금증, 금융통장사본 등</li> </ul> <p>ex) '18.5월에 근로자 2인 지원신청시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A(1월 입사), 근로자 B(3월 입사)                      → 근로자 A : 1월 임금대장,                      근로자 B : 3월 임금대장</p>	<p><b>근로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</li> <li>• 임금지급 내역 확인 서류 등</li> </ul> <p><b>업종 확인이 가능한 서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자 등록증, 농업경영체증명서,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어업허가증 등</li> </ul>

**공통 첨부서식:** 근로계약서, 체크리스트(예,아니오 체크)  
 신청세부내역(지급받을 계좌번호, 지급희망일 등 입력)

# 신청절차



## ▶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

• 사업장 요건	예	아니오
1.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2.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3. 전(전)년도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 (개인: 사업소득금액, 법인: 당기순이익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4.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5.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6.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7.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• 근로자 요건(반드시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)		
1. 신청대상 근로자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입니다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2. 신청대상 근로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3.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4.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5.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# 신청절차



## ✓ 추가신고(3공단, 고용센터, 주민센터로 신청)

### 추가 신고

- 신규 입사 등으로 지원대상 근로자가 추가 되는 경우
  - ➡ '고용보험 신고서'로 신고(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,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)

### 변경 신고

- 사업장 및 지원 근로자 변경 사항
  - ➡ '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'로 신고 + 고용보험 변경사항 신고서 제출 병행
- 지원대상 근로자 퇴사 시
  - ➡ '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 신고서'로 신고 +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

# 신청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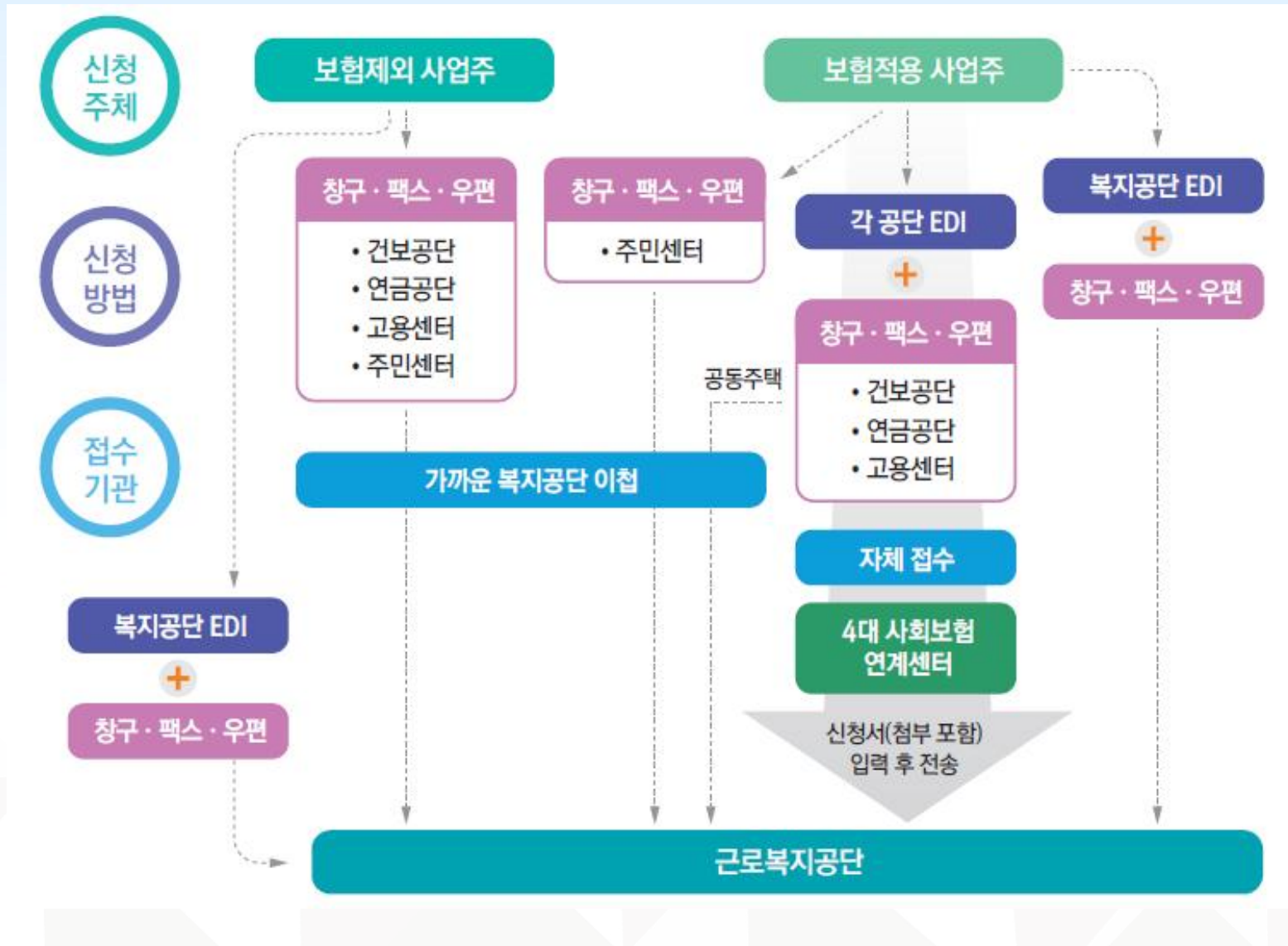
## ☑ 신청 시 유의사항

- ▶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 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'해당 대상자별'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- ▶ 연 1회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, 매월 자동 지급
  - 근로자 퇴사, 사업장 주소이전 등 신청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
  -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·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실제 근무여부 등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'고용 유지 확인서류'를 매월 **지급희망일 전 7일까지** 제출(팩스 등)하여야 함
- ▶ '공동주택'의 경우, 신청인과 지원금 지급 주체가 달라 '근로복지공단'으로 온/오프라인으로 신청
  - ※ 단,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함
- ▶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, 일용직의 '근로내용확인신고서', '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'의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(고용 · 산재보험토털서비스)에서만 가능
- ▶ 오프라인 신청(방문 또는 팩스 등)은 3공단, 고용센터, 읍면동사무소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 모두 가능
- ▶ 오프라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'일자리 안정자금 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' 또는 근로복지공단 EDI(고용 · 산재보험토털서비스)에서 다운받아 사용

# 신청절차



## 신청 세부 흐름도



# 사회보험료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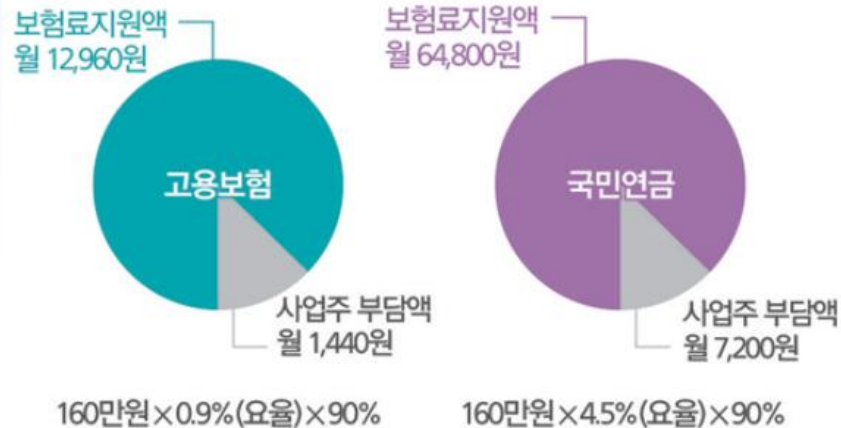


## 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· 수준향상

- 지원대상 기본보수 : (현행) 월 보수 140만원 미만 ➡ (개선) 190만원 미만
-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: (현행) 60% ➡ (개선) 신규 90%(5~10인 미만 8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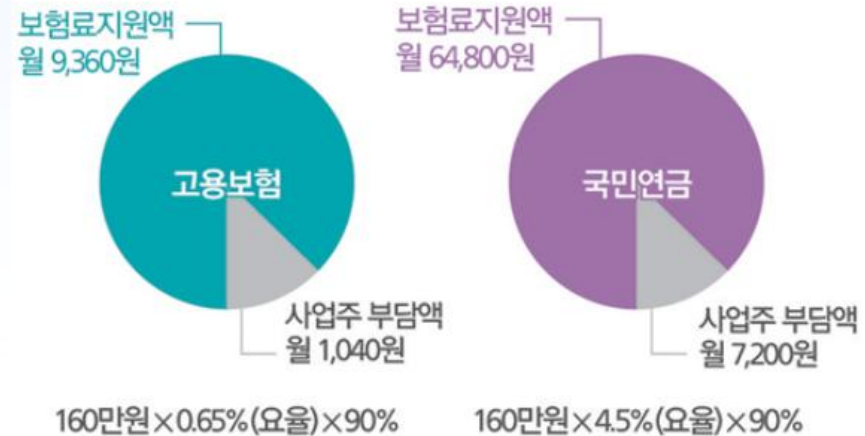
### 신규지원자의 사업주 지원액 산정

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7,760원 지원  
\*고용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



### 신규지원자의 근로자 지원액 산정

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60만원이라면 매월 74,160원 지원  
\*고용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



## ☑ 건강보험료 50% 경감(18년 한시)

-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

## ☑ 4대 보험 신규가입시 2년간 세액공제

- 10인 미만 고용기업 보험료 부담액의 50%

# 신청방법 예시(온라인)



Browser address bar: http://jobfunds.or.kr/

Navigation menu: HOME | CONTACT US

Logo: 최저임금 해결사 일 자리 안정자금

Menu items: 사업소개, 지원절차, 신청방법, 사업홍보, FAQ

Main banner text: 사장님! 최저임금 걱정은 일 자리 안정자금에 맡기세요!

Phone icon: 지원신청문의

Text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,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

Selection area: 선택하세요

Logos in selection area: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,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, h-well 국민건강보험, NPS 국민연금공단, 고용보험

Footer navigation:

- 신청방법 동영상 (Red button with play icon)
- 신청서 다운로드 (Blue button with download icon)
- 신청대행기관 찾기 (Green button with magnifying glass icon)
- 두루누리 (Orange button with logo)
- 공지사항 (Teal button)
- FAQ (White button)
- + (Expand icon)

FAQ list:

- ▶ 일자리 안정자금 Q&A
- ▶ 선원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
- ▶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·접수 가이드
- ▶ (보도자료) 내년 1월 "최저임금 해결사"
- ▶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

# 신청방법 예시(온라인)



최저임금 해결사 일 자리 안정자금

사업소개    지원절차    신청방법    사업홍보    FAQ

신청대행기관 찾기 >

<p>최저임금 해결사 토탈서비스 신청방법 고용보험 가입사업장</p>	[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①]
<p>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편</p>	
<p>최저임금 해결사 토탈서비스 신청방법 적용제외</p>	[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②]
<p>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편</p>	
<p>최저임금 해결사 토탈서비스 신청방법 공동주택</p>	[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③]
<p>공동주택 편</p>	
<p>최저임금 해결사 토탈서비스 신청방법 신규정범</p>	[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④]
<p>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편</p>	



감사합니다